

2/0 77!

P.R. 불필요

자 통 제	제 218호 지정선지정선 기대농촌	계획과 윤정병	전화번호 361	근거서류접수일자						
운영	계획	사무	계획	과장	도시계획	장	제	그부시장	시	장
판 계 판 서 명	7.4.2.4.2.4	총부과장 시정과장 건축과장	내무국장	7.16	7.10					
기 년 월 일	1963. 6. 26	시 년 월 일	1963. 7. 12	보 존 년 한						
분 류 기 호	전체통제	종 결	정 서	기 장	08937					
경 수 참	유 신 조	발 신								
제 목	건축선 지정 신청									
<p>시내 송토구 소격동 12 박 만 수 로부터 늘어난 서대문구 대조동 88번지 의 50^호번지 지내 건축선지정선 신청이 있어 현장 조사하온바 별지복 명서와 같이 별지장이 없다고 사료 되옵기 별안과 같이 시행코저 결재를바 랍니다.</p> <p>안 1</p> <p>서울특별시 고시제 77호</p> <p>건축법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관계도면은 서 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계획과 및 관할구청 건설과에 비치 하고 일반의 종람 에 공한다</p> <p>1963. 7. 12</p> <p>서울특별시 장 윤 태 일</p>										

338

3-1
110

545

종목	위	치	특원	연장	비	고
건축 선	서대문구대조동88-50		4	26.50		
안 2						
서도제 3 호						
우선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12 박만수						
1963. 6. 17자로 출원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조동 88-50번지						
내 건축선 지정신청에 관하여 별지 고시문과 같이 지정함						
1962.						
서울특별시 장운태 일						
(별지 고시문 및 신청서 첨부)						
안 3						
수신	서대문구청장			발신	의명 총무과장	
제목	동 명					
시내 종로구 소격동 12 박만수 출원에 의하여 귀구관내 대조 동 88-50번지내 별지 고시문 및 도면과 같이 건축선을 지정 하였으니 본 건 시행에 유류 없도록 합치.						
유첨	고시문 및 관계도면 각 1부. 글.					
안 4						
수신	공보실장			발신	도시계획국장	

서울특별시

544

337

///

제 목 | 동 명

별지와 같이 고시하였으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첨 고시문 1부. 끝.

복 명 서

명에 의하여 시내 서대문구 대조동 88 번지 50 호내

현장을 조사 하온바 다음과 같사옵기 복명 하나이다.

서 기 1963 년 6 월 20 일

도시계획국 계획 과 근무

직지방토목조사보성명준 경 병 (인)

서울 특별시 장 귀 하

1. 장 소 서대문구 대조동 88 번지 50 호내

2. 토지 소유권 관계 사치지. (승낙서첨부)

3. 현 황 평면지 매입 (동남측으로는 멀짐카이고 북서측은) (반(田)로 이루어져 있음)

4. 축저 코저 하는 도로 폭원 연장 폭원 4m. 연장 26m

5. 도로 연결 관계 가 함

6. 배수 연결 관계 가 함

7. 의 견 별첨도면과 같이 허가 하여도 별지장 없다고 사료됨.

* 88~51 } 어리이 별첨도면과 같이 많장물 하로서 도로로 사용
88~3 } 하고있으므로 88~51 어리이 건축선물 리침 함으
88~7 }
88~8 } 로 현대로 4m 을 확보 할수 있음.

각종

建築線指定申請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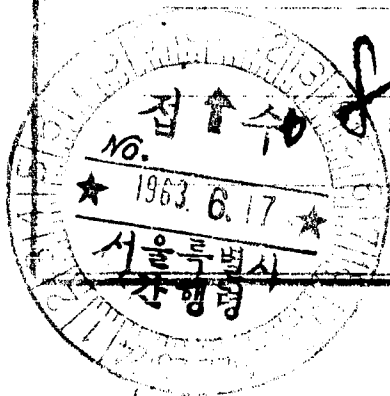
西紀 1963年 6月 10日

서울特別市西大門區大葉洞 88번지 450

朴萬洙 

서울特別市長 黃下

建築敷地造成을爲하여 上記位置에
建築線을指定 且 關係圖書面을添付
하여 茲에 申請하노이다



541

114

540

334

一. 關係者

關係者姓名	地址所有權人	住所	姓名
11年特別市 50年11月大專訓 28-50	地址所有權人	地址所有權人 地址所有權人	朴善洙

二. 建築線位置間隔及延長

號數	地址所有權人	間隔	延長
	11年特別市 50年11月大專訓 28-50	四米	三米

三. 突出建築物

該項事項無

四. 建築線位置量法

細則第十八條之依此標準辦理

五. 道路完成予定期

該項事項無

가하 № 02365

發行 6099

添加消化種別	消化者姓名	國債名稱
	신	539

國債消化證明書

五圓

539

116

서울특별시 중구

(徵收機關)

右와如히 國債消化하였음을 證明함

- 2.1. 金額訂正은 無効함
- 2.2. 金額은 漢字로 表示하고 數字中一、二、三、十、은 半트지
- 3. 本證明書에 店印、取扱者印을 捺印한 것의 限하여 有効함
- 4. 本證明書에 紛失如何을 莫論하고 再發行 하지 않음

Handwritten notes on the left margin.

Vertical handwritten text, possibly a date or reference number.

서기 1963년 6월

구청장

538

서울특별시 중구

Vertical handwritten text on the left side of the lower section.



Vertical handwritten text in the lower middle.

Vertical handwritten text on the right side of the lower section.

537

118

Handwritten mark.

330

No. 412 호

지세완납증명서

주소 또는
거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로동 가 12번지 호

영업장소 서울특별시 구 동 가 번지 호

상호 또는
업 종
성 명

박萬洙

위해 적은자는 서기 1963년 8월 12일 현재로 채납이
없음을 증명함

서기 1963년 8월 12일

경 유	년	월	일	구청장

538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청장 한 상

331

17

使用承諾書

一 位置 仁川特別市西谷區大森洞八〇番地

一 面積 五〇八坪

如記之本人所有地인바 今般貴下가 建築한이 있어
此를 使用하심을 承諾하나다

西紀 九六三年 一月 日

所有者 朴三山



朴萬洙 貴下

537

118

116

甲		(示 表 畫 動 不) 部 題 表	
番 順 位	事 項 欄	番 順 位	表 示 欄
	<p>如 種 類 變 更 外 資 之 移 動 亦 應 予 以 注 意 凡 有 移 動 者 應 於 移 動 前 向 本 局 申 報 備 案 俾 得 查 核 在 案 始 得 移 動 其 他 事 項 亦 應 照 章 辦 理 此 佈</p> <p>三 〇 三 〇 〇</p>		<p>本 局 為 查 核 外 資 之 移 動 特 訂 定 外 資 移 動 申 報 規 則 凡 有 移 動 者 應 於 移 動 前 向 本 局 申 報 備 案 俾 得 查 核 在 案 始 得 移 動 其 他 事 項 亦 應 照 章 辦 理 此 佈</p> <p>三 〇 三 〇 〇</p>
番 順 位	事 項 欄	番 順 位	表 示 欄
番 順 位	事 項 欄	番 順 位	表 示 欄
番 順 位	事 項 欄	番 順 位	表 示 欄

土 地 建 物 登 記 簿 本 用 紙 (甲)

承 承 承

寫 障
台 校

535

536



329

119

乙		(權有所) 區	
	番順 號位		
	事 項 欄		
	番順 號位		
	事 項 欄		
	番順 號位		
	事 項 欄		
533			534

空
閑



(權外權所) (利斗以有) 區	
	
531	532

張

此謄本은登記簿에依하여이를作成하고
茲에登記簿와相違없음을認證함

西紀壹九六

月 日

서



覺書

何者特舉一類既已十於川 其地

外 兼 備

東人之在江中者必遭害甚多是以危者
宜提此類

記

一、西元一九三三年七月十日以前提馬地建築保險
處中清書明依此送與總署俾得接洽
建築執照一切事宜
和用行為等取行抄可也
望貴局轉外已否以電首提此也

西元一九三三年七月四日

外 兼 備

何者特別而也

中 外